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999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2 선고 2020나99923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19가단51011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, 이형용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빈

변론종결 2021. 8. 24.

판결선고 2021. 11. 2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가단51011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주위적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2018. 5. 17. 체결된 716,693,308원의 증여계약, 2018. 5. 17. 체결된 133,655,479원의 증여계약, 2018. 6. 19. 체결된 7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18. 7. 31. 체결된 13,655,281원의 증여계약을 75,913,97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5,913,9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예비적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20. 체결된 5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18. 6. 21. 체결된 1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18. 6. 21. 체결된 2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75,913,97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5,913,9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18. 5. 17., 2018. 6. 19., 2018. 7. 31.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 2018. 6. 20., 2018. 6. 21.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,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,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.

2. 인정사실

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‘인정사실’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2018. 6. 20.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70,000,00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C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2017. 12.경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, ② C은 2018. 6. 20. T 계좌로 50,000,000원을, 2018. 6. 21. N 계좌로 10,000,000원을, 2018. 6. 21. S 계좌로 20,000,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, ③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T, N, S와 금전거래관계가 없었고, 위 사람들은 피고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C은 피고의 지인인 T, N, S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나아가 C은 2018. 6. 20.경 적극재산으로는 예금채권 83,037,010원이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70,000,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나,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. 그러므로 C과 피고 사이의 2018. 6. 20., 2018. 6. 21.자 증여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과 피고의 관계, 위 각 증여계약 체결당시 C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, C은 위 각 증여계약 체결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C을 대신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,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대출 즉시 모두 피고에게 이체되었으므로, C이 원고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, ② 피고도 원고 직원과의 2018. 10. 22.자 전화통화에서 수용보상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8. 6. 20. 체결된 5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18. 6. 21. 체결된 10,000,000원의 증여계약, 2018. 6. 21. 체결된 2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75,913,97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다.

그런데 피고가 자신이 증여받은 위 각 금원을 제3자인 T, N, S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5,913,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태훈, 판사 정하경, 판사 박선민